

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(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)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「자동차관리법」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9. 7.

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

○ 공고기간: 2026. 9. 7. ~ 2026. 9. 30.(24일간)

○ 공고내용

1. 행정처분 제목		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			
2. 대상차량	등록번호	808더9823 등 13건(붙임 참조)			
	차명				
3. 운행정지사유		소유자의 요청 등			
4. 법적근거		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			
5. 관할관청		기관명	인천광역시 서해구청	담당부서	차량민원과
		주소	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299(심곡동) (☎ 032-560-4877, FAX 032-560-2793)		

○ 유의사항

가. 「자동차관리법」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·요청 등)에 의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(해제)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고합니다.

나.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(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)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, 또한 같은 법 제81조(벌칙) 및 제82조(벌칙)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다. 운행정지명령에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제13조(말소등록)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,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(벌칙)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○ 문 의 처: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(☎ 032-560-4877)

○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

연번	자동차등록번호	차명	소유자명	운행정지명령 등록일
1	808더9823	붕고III 냉동차	홍*표	2026.08.28
2	301수4882	Bentayga V8	하****(주)	2026.08.28
3	375저7092	BMW 740i xDrive	비***** (주)	2026.08.26
4	257무2952	스포티지	손*현	2026.08.19
5	252누9007	G90 롱휠베이스(G90 LONG WHEEL BASE)	하****(주)	2026.08.18
6	58아5502	제네시스(GENESIS)	신*복	2026.08.14
7	59거0796	QM3	이*재(99%),정*례(1%)	2026.08.14
8	160너8504	Mercedes-Benz S450 4MATIC	하****(주)	2026.08.14
9	177루4335	Mercedes-Benz S580 4MATIC	하****(주)	2026.08.11
10	51라8142	e-tron 50 quattro	제***** (주)	2026.08.10
11	293두3773	Rolls-Royce Ghost EWB	하****(주)	2026.08.05
12	342로5167	레인지로버 벨라 P380	케***** (주)	2026.08.04
13	127보2831	G80	김*조	2026.08.03